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범 인 **대 한 병 원 협 회**

수 신 전국 병원장  
참 조 보험(원무) 부서장  
제 목 고시 개정안내

---

1. 관련근거

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- 77호 (2015.5.21)

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- 78호 (2015.5.21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고시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39호, 2015.3.2.) 및 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70호, 2015. 4. 29.)를 아래와 같이 개정·발령하였기에 안내합니다.

가. 주요 개정 사항

- '경피적 대동맥판삼입' 관련 사항

- 붙임 : 1.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 
2.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(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향에서 다운로드 가능함). 끝.

**대 한 병 원 협 회 장**



---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184 ( 2015.05.22 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[ldm@kha.or.kr](mailto:ldm@kha.or.kr)